



의안번호	제 2015 - 15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4. 13. (제6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16
II.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 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37
1. 개요	37
2.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38
I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58
IV.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59
1. 개요	59
2. 관련 규정	59
3. 공개 방법	60
4. 추진 일정	60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61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61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62

□ 별첨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4. 12. 31.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4. 12.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50	26	76
	강도살인미수	19	6	25
	살인	1,361	260	1,621
	살인교사	3	3	6
	살인미수	1,876	348	2,22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35	6	41
	존속살해	135	32	167
	존속살해미수	67	13	80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1	0	1
	전체	3,554	694	4,248
뇌물범죄	뇌물공여	2,423	447	2,870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2	1	3
	뇌물공여의사표시	4	9	13
	뇌물수수	1,675	342	2,017
	뇌물약속	2	0	2
	뇌물요구	2	2	4
	부정처사후수뢰	83	16	99
	수뢰후부정처사	100	12	11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제3자뇌물교부	128	24	152
	제3자뇌물취득	136	27	163
	특가법(뇌물)	553	127	680
	특가법(뇌물)교사	0	1	1
	전체	5,110	1,008	6,118
성범죄	강간	983	351	1,334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754	103	857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291	163	1,454
	강도강간	79	11	90
	강제추행	7,009	3,563	10,572
	강제추행상해	163	20	183
	강제추행치상	517	90	607
	미성년자의제강간	96	11	107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9	2	1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5	23	12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1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	2	2
	상습강제추행	7	7	14
	상습준강제추행	3	0	3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15	39	75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71	8	179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200	4	204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86	9	195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95	18	41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9	6	14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83	7	19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2	19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9	6	55
	성폭력범죄(특수강간)	490	11	501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33	21	354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2	0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4	2	12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86	68	95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510	331	84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3	11	2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71	38	10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1	22	4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41	15	5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0	10	1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434	75	509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38	44	48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127	67	19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56	145	30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30	14	34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99	56	15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34	19	5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20	16	3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91	66	15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0	16	1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4	3	7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76	16	9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0	6	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996	195	1,19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0	19	1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0	2	2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0	9	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0	21	2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1	58	31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05	104	40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8	13	4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67	24	9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044	166	1,21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02	43	34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제추행)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59	36	19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443	113	55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36	16	5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018	241	3,25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9	13	2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13	26	3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950	695	1,64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10	71	18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00	50	15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42	39	8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교사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32	18	5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5	7	1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91	137	32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0	2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0	20	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유사성행위)	0	2	2
	유사강간	32	73	105
	유사강간상해	3	4	7
	유사강간치상	6	13	19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준강간	570	237	807
	준강간교사	0	1	1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68	15	83
	준강제추행	1,036	494	1,530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8	0	18
	준유사강간	16	37	5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27,753	8,540	36,293
강도범죄	강도	633	88	721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2,774	400	3,174
	강도상해교사	3	0	3
	강도치사	20	2	22
	강도치상	210	46	256
	준강도	351	62	413
	준특수강도	58	9	67
	특가법(강도)	36	2	38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8	14	62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2,351	339	2,690
	전체	6,555	962	7,517
횡령·배임 범죄	배임	2,159	419	2,578
	배임교사	1	0	1
	업무상배임	2,681	561	3,242
	업무상배임교사	0	1	1
	업무상횡령	11,214	2,257	13,47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업무상횡령교사	0	1	1
	특경가법(배임)	1,346	224	1,570
	특경가법(배임)교사	1	0	1
	특경가법(횡령)	1,863	349	2,212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0,063	2,120	12,183
	횡령교사	0	2	2
	전체	29,329	5,934	35,263
위증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5	0	5
	모해위증	83	8	91
	모해위증교사	2	2	4
	위증	5,421	1,020	6,441
	위증교사	752	145	897
	전체	6,263	1,175	7,438
무고범죄	무고	7,881	1,284	9,165
	무고교사	32	16	48
	특가법(무고)	32	5	37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7,946	1,305	9,251
총 계		86,510	19,618	106,128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4. 12.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3	4	7
	간음유인	3	8	11
	미성년자약취	35	20	55
	미성년자유인	27	5	32
	성매매인신매매	0	4	4
	성매매약취	0	2	2
	영리약취	6	1	7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영리유인	14	30	44
	추행유인	4	0	4
	특가법(약취·유인)	23	2	25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8	1	5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1	0	1
	전체	174	77	251
사기범죄	사기	90,307	38,943	129,250
	사기교사	5	0	5
	상습사기	348	101	449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1	3
	준사기	44	57	101
	컴퓨터등사용사기	1,040	594	1,634
	특경가법(사기)	2,181	993	3,174
	전체	93,927	40,689	134,616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77	30	107
	산림보호법위반	126	45	17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528	202	73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0	1	1
	상습절도	4	18	22
	상습특수절도	2	3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390	601	1,9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3	0	3
	야간방실침입절도	139	41	180
	야간선박침입절도	4	3	7
	야간주거침입절도	913	331	1,244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16,872	6,473	23,345
	절도교사	51	15	66
	특가법(산림)	88	34	122
	특가법(절도)	5,358	1,968	7,326
	특수절도	8,693	2,834	11,527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특수절도교사	20	14	34
	전체	34,269	12,613	46,882
공문서범죄	공문서변조	228	139	367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970	265	1,235
	공문서부정행사교사	9	2	11
	공문서위조	782	272	1,054
	공문서위조교사	5	1	6
	공전자기록등변작	1	1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174	390	1,564
	공전자기록등위작	34	14	48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424	124	548
	변조공문서행사	17	1	18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74	5	79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30	6	36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83	50	133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112	61	173
	허위공문서작성교사	0	1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9	0	9
	전체	3,959	1,332	5,291
사문서범죄	변조사문서행사	157	67	224
	사도화변조	0	1	1
	사도화위조	2	0	2
	사문서변조	168	51	219
	사문서변조교사	0	1	1
	사문서부정행사	10	3	13
	사문서위조	3,558	1,424	4,982
	사문서위조교사	13	3	16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사전자기기록등변작	10	0	10
	사전자기기록등위작	49	14	63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2	1	3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3	0	3
	위조사문서행사	260	56	31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44	39	18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0	0	10
	허위작성진단서행사	6	3	9
	허위진단서작성	32	2	34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4,426	1,665	6,091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12,356	7,999	20,355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1	4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363	383	1,746
	공용물건은닉	5	0	5
	공용서류무효	30	6	36
	공용서류손상	122	54	176
	공용서류은닉	10	1	11
	공용전자기록등손상	4	0	4
	위계공무집행방해	619	264	883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2	1	3
	특수공무집행방해	758	380	1,1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2	149	571
	특수공용물건손상	25	4	29
	전체	15,723	9,242	24,965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40	177	517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위생관리법위반	1,486	572	2,05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4	2	6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31	15	4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720	169	8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1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1	12	33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3,838	1,669	5,507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1	4
	약사법위반	904	432	1,336
	의료법위반	1,955	675	2,630
	의료법위반교사	3	5	8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5	0	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463	317	7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58	19	77
	전체	9,852	4,065	13,917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431	554	1,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12	55	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8,164	3,032	11,19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960	170	1,130
	특가법(마약)	2	0	2
	특가법(향정)	30	21	51
	전체	10,699	3,832	14,531
총 계		173,029	73,515	246,544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4. 12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469	367	83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36	33	69
	증권거래법위반	67	17	84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특경가법(수재등)	62	47	109
	특경가법(알선수재)	170	107	277
	특경가법(증재등)	50	39	89
	전체	854	610	1,464
지식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37	20	5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3	2	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36	48	18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0	1	11
	상표법위반	1,342	747	2,089
	실용신안법위반	11	7	18
	저작권법위반	991	544	1,535
	특허법위반	26	11	37
	전체	2,556	1,380	3,936
폭력범죄	상습상해	0	2	2
	상습존속폭행	1	1	2
	상습폭행	4	1	5
	상습협박	0	1	1
	상해	24,427	15,267	39,694
	상해교사	4	2	6
	상해치사	143	71	214
	존속상해	153	84	237
	존속상해치사	10	6	16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51	24	75
	존속폭행치사	3	3	6
	존속폭행치상	3	1	4
	존속협박	11	9	20
	중상해	80	40	120
	특가법(보복범죄등)	45	2	47
	특가법(보복상해등)	38	70	108
	특가법(보복상해등)교사	0	2	2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특가법(보복폭행등)	39	49	88
	특가법(보복협박등)	72	113	185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168	832	2,000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02	31	133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5	0	5
	특수협박	137	51	188
	폭처법(공동상해)	6,265	3,517	9,782
	폭처법(공동상해)교사	2	2	4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0	5	15
	폭처법(공동폭행)	1,474	1,103	2,577
	폭처법(공동폭행)교사	5	1	6
	폭처법(공동협박)	184	121	305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0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7	4	1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9	2	1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1	2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7	13	40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11	1	1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11	1	12
	폭처법(상습상해)	143	58	201
	폭처법(상습존속상해)	6	3	9
	폭처법(상습존속폭행)	7	1	8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6	5	1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2	1	3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5	1	6
	폭처법(상습폭행)	108	74	182
	폭처법(상습협박)	17	13	30
	폭처법(야간·공동상해)	19	7	26
	폭처법(야간·공동폭행)	0	2	2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8,435	5,233	13,668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9	4	13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44	32	76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8	6	14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22	20	42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1,869	1,440	3,309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2	1	3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2,301	1,808	4,109
	폭행	9,774	7,303	17,077
	폭행교사	0	1	1
	폭행치사	123	56	179
	폭행치상	322	267	589
	협박	1,342	901	2,243
	협박교사	2	0	2
	전체	59,081	38,670	97,751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386	10,350	26,736
	특가법(도주차량)	7,805	4,596	12,401
	특가법(도주차량)교사	1	2	3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5,069	2,754	7,823
	전체	29,261	17,702	46,963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986	1,948	2,934
	공직선거법위반교사	0	1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4	123	127
	전체	990	2,072	3,062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780	1,499	2,279
	지방세기본법위반	6	10	16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특가법(조세)	45	73	118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56	261	417
	전체	987	1,843	2,830
공갈범죄	공갈	207	477	684
	특경가법(공갈)	5	14	19
	폭처법(공동공갈)	267	535	802
	폭처법(공동공갈)교사	2	0	2
	폭처법(상습공갈)	7	38	45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공갈)	0	1	1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9	35	44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0	1	1
	전체	498	1,101	1,599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1	6	7
	공용자동차방화	1	0	1
	공익건조물방화	0	2	2
	일반건조물방화	26	43	69
	일반건조물방화교사	0	1	1
	일반물건방화	21	51	72
	일반자동차방화	21	30	51
	현존건조물방화	11	17	28
	현존건조물방화치상	0	8	8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0	1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0	1	1
	현주건조물방화	86	112	198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	1	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0	15	25
	전체	180	288	468
총 계		94,407	63,666	158,073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접수건수임.

라. 제4기 대상범죄(2014. 7. 1. ~ 2014. 12. 31.)

범죄	세부죄명	2014. 7. 1. ~ 12. 31.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230
	배임증재	168
	전체	398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177
	전체	177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93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1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13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56
	전체	2,222
체포·감금· 유기·학대 범죄	감금	16
	감금치상	7
	노인복지법위반	3
	아동복지법위반	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유기치사	3
	존속감금	2
	존속체포치상교사	1
	중감금	2
	중감금치상	3
	청소년보호법위반	2
	폭처법(공동감금)	249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32
	전체	1
총 계		381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접수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014. 12. 31.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4.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3. 12.	살인범죄	수	3,170	2	0	3,172
		비율	99.9%	0.1%	0.0%	100.0%
	뇌물범죄	수	2,263	1,431	75	3,769
		비율	60.0%	38.0%	2.0%	100.0%
	성범죄	수	16,469	3,481	1,748	21,698
		비율	75.9%	16.0%	8.1%	100.0%
	강도범죄	수	5,709	38	0	5,747
		비율	99.3%	0.7%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3,721	16,531	4,617	24,869
		비율	15.0%	66.5%	18.6%	100.0%
	위증범죄	수	114	4,264	1,070	5,448
		비율	2.1%	78.3%	19.6%	100.0%
	무고범죄	수	223	4,788	1,516	6,527
		비율	3.4%	73.4%	23.2%	100.0%
	전체	수	31,669	30,535	9,026	71,230
		비율	44.5%	42.9%	12.7%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4. 1. ~ 2014. 12.	살인범죄	수	707	1	0	708
		비율	99.9%	0.1%	0.0%	100.0%
	뇌물범죄	수	527	310	9	846
		비율	62.3%	36.6%	1.1%	100.0%
	성범죄	수	4,915	3,578	202	8,695
		비율	56.5%	41.2%	2.3%	100.0%
	강도범죄	수	1,014	10	0	1,024
		비율	99.0%	1.0%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942	3,979	1,132	6,053
		비율	15.6%	65.7%	18.7%	100.0%
	위증범죄	수	31	877	331	1,239
		비율	2.5%	70.8%	26.7%	100.0%
	무고범죄	수	61	1,032	354	1,447
		비율	4.2%	71.3%	24.5%	100.0%
	전체	수	8,197	9,787	2,028	20,012
		비율	41.0%	48.9%	10.1%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4.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3. 12.	약취·유인범죄	수	141	46	0	187
		비율	75.4%	24.6%	0.0%	100.0%
	사기범죄	수	4,504	52,742	16,603	73,849
		비율	6.1%	71.4%	22.5%	100.0%
	절도범죄	수	3,136	22,393	5,536	31,065
		비율	10.1%	72.1%	17.8%	100.0%
	공문서범죄	수	216	1,820	852	2,888
		비율	7.5%	63.0%	29.5%	100.0%
	사문서범죄	수	193	2,528	1,289	4,010
		비율	4.8%	63.0%	32.1%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820	6,392	5,747	12,959
		비율	6.3%	49.3%	44.3%	100.0%
	식품·보건범죄	수	204	2,244	5,366	7,814
		비율	2.6%	28.7%	68.7%	100.0%
	마약범죄	수	1,342	7,870	159	9,371
		비율	14.3%	84.0%	1.7%	100.0%
	전체	수	10,556	96,035	35,552	142,143
		비율	7.4%	67.6%	25.0%	100.0%
2014. 1. ~ 2014. 12.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수	28	17	1	46
		비율	60.9%	37.0%	2.2%	100.0%
	사기범죄	수	2,486	32,201	7,007	41,694
		비율	6.0%	77.2%	16.8%	100.0%
	절도범죄	수	1,335	9,797	2,514	13,646
		비율	9.8%	71.8%	18.4%	100.0%
	공문서범죄	수	77	1,036	298	1,411
		비율	5.5%	73.4%	21.1%	100.0%
	사문서범죄	수	75	1,536	587	2,198
		비율	3.4%	69.9%	26.7%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346	6,948	1,792	9,086
		비율	3.8%	76.5%	19.7%	100.0%
	식품·보건범죄	수	84	1,449	2,632	4,165
		비율	2.0%	34.8%	63.2%	100.0%
	마약범죄	수	686	3,220	67	3,973
		비율	17.3%	81.0%	1.7%	100.0%
	전체	수	5,117	56,204	14,898	76,219
		비율	6.7%	73.7%	19.5%	100.0%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4.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3. 12.	증권·금융범죄	수	178	212	44	434
		비율	41.0%	48.8%	10.1%	100.0%
	지식재산범죄	수	5	732	1,305	2,042
		비율	0.2%	35.8%	63.9%	100.0%
	폭력범죄	수	2,256	22,434	23,442	48,132
		비율	4.7%	46.6%	48.7%	100.0%
	교통범죄	수	1,433	15,821	7,585	24,839
		비율	5.8%	63.7%	30.5%	100.0%
	선거범죄	수	852	37	0	889
		비율	95.8%	4.2%	0.0%	100.0%
	조세범죄	수	23	169	105	297
		비율	7.7%	56.9%	35.4%	100.0%
	공갈범죄	수	23	174	39	236
		비율	9.7%	73.7%	16.5%	100.0%
	방화범죄	수	106	4	0	110
		비율	96.4%	3.6%	0.0%	100.0%
	전체	수	4,876	39,583	32,520	76,979
		비율	6.3%	51.4%	42.2%	100.0%
2014. 1. ~ 2014. 12.	증권·금융범죄	수	250	299	36	585
		비율	42.7%	51.1%	6.2%	100.0%
	지식재산범죄	수	16	610	840	1,466
		비율	1.1%	41.6%	57.3%	100.0%
	폭력범죄	수	1,644	21,708	15,800	39,152
		비율	4.2%	55.4%	40.4%	100.0%
	교통범죄	수	86	13,416	4,838	18,340
		비율	0.5%	73.2%	26.4%	100.0%
	선거범죄	수	1,503	29	0	1,532
		비율	98.1%	1.9%	0.0%	100.0%
	조세범죄	수	472	863	380	1,715
		비율	27.5%	50.3%	22.2%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공갈범죄	수	82	833	140	1,055
		비율	7.8%	79.0%	13.3%	100.0%
	방화범죄	수	338	4	3	345
		비율	98.0%	1.2%	0.9%	100.0%
	전체	수	4,391	37,762	22,037	64,190
		비율	6.8%	58.8%	34.3%	100.0%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4. 12.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4. 7. ~ 2014. 12.	배임수증재범죄	수	56	140	10	206
		비율	27.2%	68.0%	4.9%	100.0%
	변호사법위반범죄	수	15	68	7	90
		비율	16.7%	75.6%	7.8%	100.0%
	성매매범죄	수	90	818	235	1,143
		비율	7.9%	71.6%	20.6%	100.0%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수	2	15	99	116
		비율	1.7%	12.9%	85.3%	100.0%
	전체	수	163	1,041	351	1,555
		비율	10.5%	66.9%	22.6%	100.0%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4.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살인범죄	강간살인	4	0	4
	강도살인	32	30	62
	강도살인미수	22	2	24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살인	1,222	274	1496
	살인교사	3	1	4
	살인미수	1,680	345	2025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4	9	3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117	34	151
	존속살해미수	59	12	71
	특가법(보복범죄등)	2	0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2	1	3
	전체	3,172	708	3,880
뇌물범죄	뇌물공여	1,766	386	2152
	뇌물공여교사	3	0	3
	뇌물공여약속	0	1	1
	뇌물공여의사표시	0	5	5
	뇌물수수	1,178	273	1451
	뇌물요구	1	2	3
	부정처사후수뢰	65	18	83
	사전뇌물수수	0	2	2
	수뢰후부정처사	85	16	101
	제3자뇌물교부	96	17	113
	제3자뇌물취득	105	19	124
	특가법(뇌물)	470	106	576
	특가법(뇌물)교사	0	1	1
	전체	3,769	846	4,615
성범죄	강간	676	307	983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688	128	816
	강간치사	7	0	7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강간치상	1,115	173	1288
	강도강간	70	10	80
	강제추행	4,611	3,449	8060
	강제추행상해	172	26	198
	강제추행치상	484	84	568
	미성년자간음	6	1	7
	미성년자의제강간	75	14	89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0	0	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6	21	8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1	2
	미성년자추행	1	0	1
	미성년자유사강간	0	0	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	2	2
	상습강제추행	3	2	5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25	50	675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2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0	1	1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54	7	16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59	5	164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	0	2	2
	성폭력범죄(장애인강제추행)	0	1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66	8	174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68	17	38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9	11	130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44	14	15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5	2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2	5	37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64	12	376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20	22	342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04	70	87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381	336	71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5	12	2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58	44	10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8	21	3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32	31	6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369	74	44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361	55	416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위계등추행)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89	56	14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14	127	24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86	36	32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93	65	15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26	21	4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15	17	3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57	64	12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	0	4	4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4	3	7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66	12	78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제추행)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886	246	1132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0	0	0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2	6	8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	0	5	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0	8	8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7	48	26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67	116	38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31	10	4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8	32	9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793	163	95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07	42	34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30	43	17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292	118	41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29	25	5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700	317	301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8	8	1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6	27	3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729	686	141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05	90	19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교사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83	72	15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강간)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31	37	6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33	18	51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위계등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3	6	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62	200	36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1	1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제추행)	0	4	4
	유사강간	9	74	83
	유사강간상해	1	8	9
	유사강간치상	2	11	13
	준강간	381	263	644
	준강간교사	0	1	1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59	15	74
	준강제추행	720	514	1234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6	2	18
	준유사강간	8	38	46
	준유사강간치사	0	1	1
	준유사강간치상	0	2	2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7	1	188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21,698	8,695	30,393
강도범죄	강도	575	100	675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2,266	396	2662
	강도상해교사	2	0	2
	강도치사	29	2	31
	강도치상	187	36	223

범죄군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준강도	333	72	405
	준특수강도	53	14	67
	특가법(강도)	42	4	46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51	13	64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2,144	387	2531
	전체	5,747	1,024	6,771
횡령·배임 범죄	배임	1,823	401	2224
	배임교사	2	1	3
	업무상배임	1,910	543	2453
	업무상배임교사	0	2	2
	업무상횡령	9,662	2,357	12019
	특경가법(배임)	1,081	241	1322
	특경가법(횡령)	1,688	440	2128
	특경가법(횡령)교사	0	1	1
	횡령	8,702	2,067	10769
	횡령교사	1	0	1
	전체	24,869	6,053	30,922
위증범죄	모해위증	70	21	91
	모해위증교사	1	4	5
	위증	4,610	1036	5646
	위증교사	767	178	945
	전체	5,448	1,239	6,687
무고범죄	무고	6,466	1,420	7886
	무고교사	28	22	50
	특가법(무고)	32	5	37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6,527	1,447	7,974
총계		71,230	20,012	91,242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4.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간음약취	2	2	4
	간음유인	4	4	8
	미성년자약취	31	16	47
	미성년자유인	28	4	32
	성매매인신매매	0	1	1
	영리약취	4	2	6
	영리유인	8	12	20
	추행유인	3	0	3
	특가법(약취·유인)	22	3	25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85	2	87
	전체	187	46	233
사기범죄	사기	70,461	39,480	109,941
	사기교사	6	0	6
	상습사기	305	113	418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1	3
	준사기	37	38	75
	컴퓨터등사용사기	1,122	883	2,005
	특경가법(사기)	1,916	1,179	3,095
	전체	73,849	41,694	115,543
절도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59	30	89
	산림보호법위반	96	36	1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89	194	583
	상습절도	8	3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222	574	1,7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138	46	184
	야간선박침입절도	2	3	5
	야간주거침입절도	909	451	1,360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14,215	6,604	20,819
	절도교사	41	17	58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특가법(산림)	65	30	95
	특가법(상습절도)	3	0	3
	특가법(절도)	5,318	2,292	7610
	특수절도	8,582	3,353	11935
	특수절도교사	15	13	28
	전체	31,065	13,646	44,711
공문서 범죄	공도화변조	1	0	1
	공문서변조	196	85	281
	공문서변조교사	2	0	2
	공문서부정행사	527	215	742
	공문서부정행사교사	6	2	8
	공문서위조	607	326	933
	공문서위조교사	4	4	8
	공전자기록등변작	0	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023	509	15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26	22	48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1	1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320	164	484
	변조공문서행사	4	0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0	4
	위조공문서행사	50	19	69
	자격모용공문서작성	0	3	3
	허위공문서작성	108	59	167
	허위공문서작성교사	1	1	2
	허위공문서행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0	1
	전체	2,888	1,411	4,299
사문서 범죄	변조사문서행사	16	6	22
	사문서변조	216	101	317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사문서변조교사	0	1	1
	사문서부정행사	6	0	6
	사문서위조	3,449	1,925	5374
	사문서위조교사	11	3	14
	사문서위조행사	1	2	3
	사전자기기록등변작	7	1	8
	사전자기기록등위작	39	26	65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2	0	2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111	71	18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24	54	178
	허위작성진단서행사	2	1	3
	허위진단서작성	24	6	30
	허위진단서작성교사	1	1	2
	전체	4,010	2,198	6,208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9,879	7,633	17512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물손상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272	509	1781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4	0	4
	공용서류무효	26	10	36
	공용서류손상	107	63	170
	공용서류은닉	9	3	12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0	1
	위계공무집행방해	528	304	832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2	1	3
	특수공무집행방해	670	329	9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4	229	653

범죄군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26	5	31
	전체	12,959	9,086	22,045
식품·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13	167	38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307	627	19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4	2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7	21	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594	240	8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3	9	22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1	2
	식품위생법위반	3,115	1,717	4832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1	4
	약사법위반	698	349	1047
	의료법위반	1,495	640	2135
	의료법위반교사	5	5	1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82	361	6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52	25	77
	전체	7,814	4,165	11,979
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138	499	1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89	53	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7,240	3,216	1045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885	190	1075
	특가법(마약)	2	1	3
	특가법(향정)	17	14	31
	전체	9,371	3,973	13,344
총 계		142,143	76,219	218,362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2014. 10. 1. 이후로 약취·유인범죄에서 명칭이 변경됨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4.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증권·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17	345	56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7	10	17
	증권거래법위반	45	13	58
	특경가법(수재등)	31	43	74
	특경가법(알선수재)	104	135	239
	특경가법(증재등)	30	39	69
	전체	434	585	1,019
지식재산권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22	21	4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0	2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비밀누설등)	0	3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0	1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36	41	7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보호등)	0	10	1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1	2
	상표법위반	1,169	804	1,973
	실용신안법위반	6	9	15
	저작권법위반	793	554	1,347
	특허법위반	15	20	35
	전체	2,042	1,466	3,508
폭력범죄	상습상해	0	3	3
	상습존속폭행	0	1	1
	상습폭행	3	0	3
	상습협박	1	1	2
	상해	19,241	15,485	34,726
	상해교사	2	2	4
	상해치사	123	80	203
	존속상해	155	83	238
	존속상해치사	11	5	16
	존속중상해	3	0	3
	존속폭행	40	27	67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존속폭행치사	2	1	3
	존속폭행치상	5	2	7
	존속협박	7	7	14
	중상해	62	44	106
	특가법(보복범죄등)	159	14	173
	특가법(보복상해등)	26	66	92
	특가법(보복폭행등)	32	48	80
	특가법(보복협박등)	61	124	185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089	863	1,952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93	50	143
	특수폭행치상	2	4	6
	특수협박	118	58	176
	폭처법(공동감금)	1	0	1
	폭처법(공동상해)	5,262	3,804	9,066
	폭처법(공동상해)교사	3	5	8
	폭처법(공동존속상해)	9	2	11
	폭처법(공동폭행)	1,228	995	2,223
	폭처법(공동폭행)교사	4	2	6
	폭처법(공동협박)	145	107	252
	폭처법(공동협박)교사	0	1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1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4	7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4	4	8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0	1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3	8	3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7	6	13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8	2	10
	폭처법(상습상해)	122	68	190
	폭처법(상습존속상해)	3	2	5
	폭처법(상습존속폭행)	9	1	10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6	12	18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5	0	5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5	1	6
	폭처법(상습폭행)	85	84	169
	폭처법(상습협박)	17	14	31
	폭처법(야간·공동상해)	14	11	25
	폭처법(야간·공동협박)	1	0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7,190	5,695	12,885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5	2	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45	42	8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14	7	21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28	29	57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1,553	1,456	3,008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1	3	4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2,220	1,977	4,197
	폭처법(흥기등상해)	11	0	11
	폭처법(흥기등협박)	8	0	8
	폭행	7,387	6,674	14,061
	폭행교사	3	0	3
	폭행치사	101	59	160
	폭행치상	283	273	556
	협박	1,077	830	1,907
	협박교사	1	2	3
	전체	48,132	39,152	87,284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3,830	10,691	24,521
	특가법(도주차량)	6,560	4,740	11,300
	특가법(도주차량)교사	1	1	2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4,448	2,908	7,356
	전체	24,839	18,340	43,179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884	1,466	2,350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5	66	71
	전체	889	1,532	2,421
조세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290	1,355	1,645
	지방세법위반	0	2	2
	특가법(조세)	7	67	74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0	291	291
	전체	297	1,715	2,012
공갈범죄	공갈	89	427	516
	상습공갈	0	2	2
	특경가법(공갈)	1	12	13
	폭처법(공동공갈)	132	531	663
	폭처법(공동공갈)교사	0	3	3
	폭처법(상습공갈)	6	35	41
	폭처법(야간·공동공갈)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8	43	51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교사	0	1	1
	전체	236	1,055	1,291
방화범죄	공용건조물방화	0	5	5
	공용자동차방화	2	0	2
	공익건조물방화	0	2	2
	산림보호법위반	0	4	4
	일반건조물방화	13	47	60
	일반건조물방화교사	0	2	2
	일반물건방화	13	50	63
	일반자동차방화	12	45	57
	현존건조물방화	7	21	28
	현존건조물방화치사	1	2	3
	현존건조물방화치상	0	8	8
	현존건조물방화치상교사	0	1	1
	현존자동차방화	0	1	1
	현존자동차방화치사	0	1	1

범죄군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12.	전체
	현주건조물방화	57	134	19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	6	8
	현주건조물방화치상	3	15	18
	현주자동차방화	0	1	1
	전체	110	345	455
총 계		76,979	64,190	141,169

-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4)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4. 7. 1. ~ 2014. 12. 31.)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1. ~ 12. 31.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116
	배임증재	90
	전체	206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법위반	90
	전체	90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00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7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22
	전체	1,143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감금	3
	감금치상	1
	아동복지법위반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영아유기	1
	청소년보호법위반	102
	폭처법(공동감금)	2
	폭처법(집단·흥기등감금)	2

범죄군	세부죄명	2014. 7. 1. ~ 12. 31.
	전체	116
총 계		1,555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2014. 10. 1. 이후 처리건수임.

II.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 11조 및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각급 법원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62차 회의(2015. 3. 2.)에서 의결한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조회 기간 : 2015. 3. 4. ~ 3. 27.

다. 회신 기관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3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법무사협회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0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법무사협회

라. 회신자료

- 별첨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식품·보건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허위표시 유형
 - ‘허위표시’유형의 소유형을 5 내지 6개로 세분할 필요
 - ▶ 양형기준은 허위표시에 대하여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일반 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로 구분하고 있음
 - ▶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범죄로서의 죄질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허위표시 규모를 세분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규모에 따라 뇌물수수의 양형기준과 같이 6단계 또는 횡령·배임의 양형기준과 같이 5단계로 세분할 필요가 있음
 - ‘허위표시’유형의 제1유형의 상한을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하향할 필요
 - ▶ 허위표시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단발성에 그쳐 5,000만 원 미만의 중소규모 유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다수인 실정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의 유형을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수준으로 하향할 필요성이 있음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대유형 전체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 ▶ 전반적으로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가 일반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에 단속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결탁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결탁한 행위의 위법성 자체가 중하므로 위 사유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허위표시 및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

고,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 ▶ '허위표시' 및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의 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국민 건강 및 위생 등에 위험이 크고, 이에 대한 일반의 비난 역시 이러한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보다는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법의식에 부합함

- 특별감경인자인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의 정의규정을 보완할 필요

-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는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 ▶ 그러나, '제3자' 내지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그 예시를 드는 것이 좋을 듯함

⇒ 가령 식품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가공하게 한 후 다시 매수하는 경우 일단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졌으므로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염려가 있음

⇒ 그런데 위 양형인자에 기재된 '유통'은 재화나 용역 따위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식품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가공하게 한 후 다시 매수하는 경우, 즉 이른바 아웃소싱과 유사한 경우에는 위 양형인자에 기재된 '유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위 양형인자에 대한 정의를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조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허위표시 유형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할 필

요

- ▶ 농수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롯한 식품 등에 대한 허위표시는 그 자체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중인자로 하는 것은 부당함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의 정의규정에 일반가중인자인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와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를 포함할 필요
- ▶ 특별가중인자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인자에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내지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단속공무원과 결탁하여 단속을 회피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 경우 모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 ⇒ 특히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면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의 예시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품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에는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결탁이 이루어져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큼
- ▶ 따라서 일반가중인자인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내지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에서 배제하고 특별가중인자인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에 포함시키되, 다만 그 경위나 정도에 따라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두는 것이 적절함
- 부정의료행위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객관적 위험성이 큰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 특별가중인자인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경미한 상해는 제외)’로 수정할 필요

- ▶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인자에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중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의 경우, 현재 대법원 판례상 1~2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도 상해에 해당하여 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경미한 상해는 제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할 필요
- ▶ 부정의료행위는 의사자격을 사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감정인자인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와 비교할 때 단순히 의사 자격을 사칭하면 특별가중사유이고, 그렇지 않고 환자에게 알리면 일반감정사유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본영역이 있을 수 없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의 수정이유는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임. 이에 따라 양형기준 중 일부 유형을 수정하거나 양형요소를 달리 표현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허위표시유형
 - 허위표시유형의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중 상습범,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중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 조항은 양형기준에 포함시키되,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은 제외시키기로 하는 부분에 찬성
 - 상습범,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은 기본적 구성요건이 이미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에 따른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중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조항 역시 현행 식품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우수표시품에 대한 허위표시행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행위로 삼고 있기 때문임
 -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되

었는바, 종래 화장품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법정형 3년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서 1년 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군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형량범위를 세분화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곤란할 것이라고 보임

- 양형인자 중 종래 특별가중인자로 되어 있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인자를 일반가중인자로 변경하는 부분에도 찬성
 - ▶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도 특별가중인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형인자를 중복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 신설된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에 찬성함.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위표시유형 중에서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포섭할 수밖에 없음
 - ▶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과 실질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를 택일적인 양형인자로 규정하는 것도 상당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를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현재 단계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양형기준을 달리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연하여 두고자 함
 - ▶ 법정형이 7년 이하보다 낮은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범죄군들을 모두 하나의 범죄군으로 포섭하여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수정하고, 이들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아니함
 - ▶ 보다 엄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려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인 범죄와 5년 이하인 범죄를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으나, 해당 범

죄군의 실제 재판사례(실형선고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 법정형이 종전보다 상향조정된 범죄군에 대해서도 이를 특별가중요소가 아닌 일반가중요소로 편입시키는 수정안의 내용과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포섭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기 때문

- ▶ 그러나 7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범죄와 5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범죄의 경중을 달리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범죄와 3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범죄의 경중을 달리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도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것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
- 법정형이 상향된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유지하는 것도 찬성
- ▶ 법정형이 종전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조정되기는 하였지만 종래의 양형실무를 고려할 때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한 것만으로 양형실무관행이 크게 변경되거나 변경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
- 특별가중인자로 되어 있던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에도 찬성함
- ▶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성요건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한데, 현재의 양형기준체제는 7년 이하 법정형을 규정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고 3년, 5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한 범죄들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5년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포섭할 이유가 없음
- ▶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을 양형기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음
-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다른 범죄군에서도 일

반적인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고, 종전의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양형기준안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이러한 인자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1, 2유형
 -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즉 5년 이내 동종재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함
 - ▶ 이 경우를 동종누범의 경우와 선택적인 가중인자로 규정하는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에도 찬성
 - ▶ 해당 유형에 매우 다양한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하는 것이 이상적인 양형기준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범죄군에 대하여 그와 같이 세분화된 양형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임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임

다. 법무부

○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의견

- ‘허위표시’ 유형 부분
 - 양형기준 수정안

- ▶ 새로 신설된 상습범, 재범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 법정형이 상향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를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 ▶ 그 외 법정형이 상향된 농산물 등 가공조리 판매 제공자의 원산지 허위표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징역 3년 이하 ⇒ 10년 이하),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의 기타 허위표시(식품위생법 제 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징역 3년 이하 ⇒ 5년 이하) 부분은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않음

- 검토 의견

- ▶ 재범 및 상습범 처벌 규정은 단순히 형량 상향이 아닌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신설된 만큼, 양형인자가 아닌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구분하여 형량범위를 정함이 상당
- ▶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으므로 일반양형인자가 아닌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함이 상당
- ▶ 그 외 법정형이 상향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을 설정토록 함이 상당함

※ 현행 허위표시 유형에 관한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상이한 매우 다양한 구성요건을 중·소규모/일반/대규모 3유형으로 단순 구분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각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이 형량범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양형기준에 대한 오해, 사용자의 오적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부분

- 양형기준 수정안

- ▶ 1 유형(가짜 등 기준·규격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2 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검토 의견

-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식품위생법 등 식품·보건 관련 개별 법률에 대한 특별법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 개별 법률을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제정립하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 등으로 설정함이 논리적으로 타당

※ 양형기준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법정형이 높

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의견(양형인자 추가)

- 허위 표시 유형 관련, '단체·집단급식소에 허위 표시된 식품을 공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 최근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집단급식소에 허위 표시된 식품 등을 공급하여 단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3. 24. KBS 뉴스 '어린이집 급식 사각지대' 등 최근 언론 보도 다수

▶ 다수 국민의 식품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사안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 검토의견 종합

- 식품·보건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대한 전반적 수정 필요

▶ 다양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범죄들을 지나치게 단순한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범죄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첫째 법령 개정예 따라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를 일부 조정하고, 둘째 상습범, 5년 이내 동종재범 등 신설된 가중적 구성요건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강화하며, 셋째 법정형의 차이를 양형인자에 반영하여 권고형량범위가 합리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한다는 것임

- 이러한 양형기준의 수정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짐
- 이에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 한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음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임신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임신마약류 관련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서 제외할 필요
 - 마약류관리법(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2012. 6. 8. 시행) 제5조의2에 의하여 임신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이를 반영함
 - 그런데 임신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만이 적용되는 관계로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도 각 유형 중 높은 수준의 양형기준을 적용받음(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4유형, 매매·알선 등 중 제3유형, 수출입·제조 등 중 제3유형)
 -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 라목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차등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임신마약류임에도 일괄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이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만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법정형이 높기 때문인데 그러한 입법의 문제를 여과없이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매매·알선 등’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매수, 수수’는 ‘판매, 제공’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
- 양형기준은 마약의 판매, 매수, 제공 및 수수에 대하여 동일한 형종 및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하는 내용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동의함
- 그러나 마약의 판매와 제공은 제3자를 마약 관련 범죄로 유인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측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수 및 수수와는 준별되고, 실제 다수의 하급심에서 판매, 제공과 매수, 수수는 그 행위 태양에 의하여 양형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으로는 마약의 판매, 제공과 마약의 매수, 수수는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대량범’의 제3유형은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
- 필로폰 수입죄에 대한 중국 양형과의 비교
 - ▶ 한국

순번	구분(가액)	법정형	양형기준
1	500만 원 미만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징역 2년 6월 - 8년
2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징역 3년 - 10년
3	5,000만 원 이상	"	징역 6년 - 14년

※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양형기준

1.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 중 제3유형

2.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중 제2유형

3.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중 제3유형

▶ 중국

순번	구분	법정형	양형기준
1	필로폰 50g 이상	15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징역 50년
2	필로폰 10~50g	7년 이상 징역 등	징역 7 - 8년
3	필로폰 10g 미만	3년 이하 징역 등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등	징역 내지 구역 3개월, 정상이 엄중한 경우 징역 3 - 4년

▶ 비교

※ 필로폰 1그램당 85만 원 기준으로 환산

순번	중국		한국		
	기준	양형기준	금액으로 환산	기준	양형기준
1	필로폰 50g 이상	징역 50년	4,25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징역 6년 - 14년
				4,25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징역 3년 - 10년
2	필로폰 10~50g	징역 7 - 8년	850만 원 - 4,250만 원		징역 3년 - 10년
3	필로폰 10g 미만	징역 내지 구역 3개월, 정상이 엄중한 경우 징역 3 - 4년	85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850만 원 이상	징역 3년 - 10년
				500만 원 미만	징역 2년 6월 - 8년

- 검토

- ▶ 필로폰 밀수에 있어서 필로폰 10g 미만의 경우 한국이 양형기준이 높고 필로폰 50g 이상의 경우 중국의 양형기준이 높음
- ▶ 실무에서는 밀수된 필로폰 양이 50g 이상인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필로폰 밀수로 한국인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와 중국인이 한국에

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할 때 양형기준의 차이가 최고 16배 이상
임(50년 : 3년)

- ▶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중 제3유형은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대유형 전체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을 보완할 필요

-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마약류 판매 경로를 확보할 목적 또는 성범죄로 나아갈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로 수정할 필요 있음

■ 투약·단순소지 등 및 매매·알선 등 유형

- 특별감경인자에 '고용관계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

-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의 정의규정

⇒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지시를 받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 매매·알선 등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

- 특별가중인자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의 정의규정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국가의 몰수 또는 추징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매매·알선 등 유형

- 특별가중인자에 '매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

- ▶ '매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규정

- ⇒ 적극적으로 매수인에게 마약류 투약을 권하여 이를 장기적으로 수회 판매하여 중독되게 한 결과 매수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의 ‘자수’를 ‘자수 또는 내부고발’로 수정할 필요
 - 수출입·제조 등 유형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할 필요
 - ▶ 오로지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함으로써 판매·제공과의 가벌성 차이를 양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수긍할 부분이 있음
 - ▶ 다만 동일한 특별감경인자 신설의 필요성은 수입의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음
 - ▶ 실무상 오로지 개인적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를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곤란한 사안도 있음. 이 경우 별도의 특별감경인자가 없는 이상 기본영역 선택 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4년~7년’(필로폰 등 향정 나.목의 경우)이 되어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실무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매수 또는 수수 이외에 수입의 경우에도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 양형 및 실무 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마약을 직접 소지한 채 입국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 ▶ 실무상 마약류 수입죄의 양형에 있어서 마약을 직접 소지한 채 배, 비행기 등을 타고 입국한 경우와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을 수령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음

나. 대한변호사협회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

■ 법률개정에 따른 체제의 정비 부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의 수정이유는 마약류관리법의 별칙 조항 중 각 호의 배치가 변경되었고, 정의 조항(제2조)의 정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이 수정되고 일부 용어가 변경되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별칙 조항 중 임시마약류가 추가되는 등 법률의 형식적 내용들에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로 변경된 데에 따라 현행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주된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수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찬성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양형인자 신설

- 신설하는 수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

- ▶ 현행 양형기준은 판매, 매수, 제공, 수수에 대하여 동일한 권고형량 범위를 적용하고 있으나, 판매와 제공은 타인을 마약관련 범죄로 유인하는 범행인 반면 매수와 수수는 자신의 투약 범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자에 비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음. 투약·단순소지 등 범행은 대부분 매수·수수를 수반함에도 수사상 한계 등으로 매수·수수 부분은 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여러 유형들을 양형기준상 모두 동일한 권고형량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투약이나 단순소지 등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를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구성요건규정상 동일한 법정형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행위유형들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구간을 설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임
- ▶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감경요소는 단 2가지인 반면, 특별가중요소는 4가지에 이르고 있음. 특별가중요소 중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는 실질적

으로 중첩되는 내용(후자는 전자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음)으로서 양자를 구별하여 2개의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할 본질적 필요성을 수궁하기 어려움. 또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이라고 하여 가담정도가 경한 경우까지 특별가중요소에 포섭시킬 필요는 없어 보임. 따라서 양자를 하나로 합쳐서 “조직적·전문적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경우”로 규정하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역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경우”의 예시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법무부

○ 마약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 양형기준 수정안

2유형(매매·알선 등)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수수’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로 설정

▪ 검토 의견

- 2유형(매매·알선 등)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함에는 이견 없음
- 그러나, 위 양형인자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수정안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임(주요·일반 참작사유에서 모두 제외)
 - ▶ 2유형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한 이유는 투약으로만 기소하는 경우와 매수 및 투약으로 기소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후자가 경합범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집행유예까지 허용하는 취지가 아님
 - ▶ 1유형(투약·단순소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자체만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설정하지 않고 있음에 비해 매수·수수까지 포함된 2유형에 대해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

- ▶ 마약 범죄군은 중독성·의존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고, 마약 등 투약시 환각상태에서 추가 범행 특히 강력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단순투약·소지사범의 경우에도 매도사범에 대한 수사협조로 발본색원이 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사회 격리의 필요성이 있음

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첫째로 마약류관리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둘째로 일부 양형인자를 신설하고자 한다는 것임
- 특별감경 양형인자로서 ‘오로지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판매·제공과의 가벌성 차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등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짐
- 이러한 양형기준의 수정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짐
- 이에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 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기

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음

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 수정안의 취지
 - 양형위원회는 관련법의 제·개정 또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인자의 수정이나 형종 및 형량기준의 수정을 내용으로 하는 양형기준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각각 살인범죄 양형기준 2차, 강도범죄 양형기준 1차, 성범죄 양형기준 4차,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1차에 걸쳐 수정한 바 있음. 따라서 본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양형인자를 신설하는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의 반영
 - 개정 마약류관리법의 조항 각 호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투약·단순소지 범죄군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및 마 목), 제3유형 (향정 나 및 다 목), 제4유형(향정 가 목), 매매·알선 범죄군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및 다 목),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수출입·제조 범죄군 제1유형(향정 라 목),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및 나 목),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각 「유형의 정의」에서 이를 수정하였고, 구성요건 및 법정형 내용 변경 없음
 -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처벌 조항의 변경에 따라 투약·단순소지 범죄군 제1유형(환각물질)과 매매·알선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의 각 「유형의 정의」에서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수정하였음
 - 적용법조 변경의 단순 반영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 특별감정인자의 신설
 -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매매·알선 등 범죄군은 판매·제공·매매·알

선·수수에 대하여 동일한 권고형량범위를 적용하고 있음. 다만, 타인에 대한 판매·제공 목적의 매수·수수와 본인의 투약이나 단순 소지 목적의 매수·수수의 가벌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투약과 소지를 위해서는 매수·수수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 처벌할 타당성도 없고, 실무상 별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투약·단순 소지를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의 가벌성 차이를 양형에 반영함으로써 양형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양형인자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또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 6 제2항)
- 특별 또는 일반 양형인자를 질적으로 구별하고 신설 내지 수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사,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양형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본 수정안에서는 가벌성의 차이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양형정책적 고려에 따라 “오로지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감경인자로 신설하고 판매·제공을 위한 매수·수수에 비해 형량을 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이 있는 인자로서 특별감경인자로 구별하였음
-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범행목적에 따른 특별감경인자를 인정한 예는 없으나,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의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한 예가 있음
- 양형인자로서 인정된다 하여 집행유예 참작사유로도 인정될 것은 아니지만,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한 특별감경인자 신설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직접적으로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의 하나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신설하였음

○ 검토의견

-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매매·알선 범죄군의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서 “투약 또는 단순소지 목적의 매수 또는 수
수행위”를 신설하는 양형정책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Ⅲ.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89차	2015. 4. 6. 15:00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 상습장물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IV.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5. 4. 13. 양형위원회 제63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5. 5. 초순(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5. 5. 중순(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양형기준 책자 발간 : 2015. 6. 중순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 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5. 2. 14.	○ 게시자가 피고인 민사사건(2014나 6581)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만 토로 및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개별 민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법률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접수 의견

순 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5. 3. 6.	○ 가. 도로교통법 및 사기,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요청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자동차보장보호법과 도로교통법은 동종범죄인지 여부
2	2015. 3. 30.	○ 양형기준이 법정형보다 낮다는 의견 ○ 권고형의 범위에 무기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 ○ 성범죄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가.

- 귀하께서 요청하신 교통범죄, 사기 및 횡령 범죄 양형기준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률 질의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기준이 법정형보다 낮다는 의견에 대하여, 법정형(법률에 규정

된 형)도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선고 가능한 처단형의 범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위와 같이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양형기준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권고형의 범위에 무기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중영역의 형량구간 중에 무기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할 수 있고,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전달하여 양형기준 수정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